제 176 호
2017년9월15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정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1826호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용지 매각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7-1830호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17-1831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덕양리 12-1번지 외 3필지) /23
○ 여수시 공고 제2017-1835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공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17-1836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25
○ 여수시 공고 제2017-1837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26

회람								

여수시 공고 제2017- 1826 호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용지 매각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용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용지(웅천동 1702-1) 매각

나. 매각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예정가격(원)	비 고
위 치	지목	공부면적(㎡)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02-1번지	대지	15,940.5	25,191,746,900	

다. 토지용도 : 일반상업지역

라. 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7. 9. 26(화) 10:00 ~ 9. 28(목) 16:00	2017. 9. 29.(금)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제)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에 가입하고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제33조(입찰및 계약체결의 제한)와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은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가.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

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위탁계정)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액 여수시의 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017. 10. 13.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공공기관 입찰결과〕또는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과「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한 입찰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에 해당하는 입찰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매각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10.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207. 10. 13.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18개월 이내에 대금 전액(현금)을 분할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6개월이내 낙찰금액의 20%, 계약체결 후 8개월이내에 낙찰금액의 20%, 계약체결 후 12개월이내에 낙찰금액의 20%, 계약체결 후 18개월이내에 낙찰금액의 30%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 적용하지 않음. 연체료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 적용(연체기간에 따라 12~15%)

라.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개인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위임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사용인감계 가능), 수임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기한 내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의 양도조건은 우리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낙찰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현황상태로 매각하며 공부와 지적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제한, 기존 점유사용자와의 분쟁, 실제와의 불일치, 관련법규저촉, 지장물의 명도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현장 확인, 재산목록, 공부서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라. 매각대상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취소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매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문화재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주변이웃과의 분쟁사항,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매각재산의 이용에 따른 제반 인·허가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응찰자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우리시는 재산매각 후 발생되는 일체의 행위제한 및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수속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는 매매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재산이 매수자에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전매 및 양여,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계약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우리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자.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에 의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관광휴양상업용지(1702-1)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규모: 용적률 700%이하, 건폐율 70%이하, 높이 10층 이상
- 건축허용용도: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 건축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지정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 일반상업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함.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 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여수시 공고 제2017-1830호

공 고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협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 및 위촉 위원 임기조정

* 현행 조례상 위원장 2명(시장, 교육장), 위촉 위원 임기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당연직 위원 수 축소로 학부모, 교육계, 시민 등 교육 이해당사자의 보다 많은 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

* 현행 조례상 당연직 위원 4명(시장, 교육장,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청 업무담당과장)

2. 주요내용

○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 제1항 :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2항 : 위원장은 시장과 여수교육청 교육장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 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시장, 여수시 담당업무국장, 교육장, 여수교육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담당업무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임기)

- 제1항 :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기간: 2017. 9. 18. ~ 10. 10.(22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장(교육지원과장)

나) 전 화: 061)659-5231, 팩스: 061)659-5854

다) 이메일(E-Mail): pds011@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 이내
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고 제2017 - 1831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1번지 외 4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63.0m	6.0m	499㎡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소라면 덕양리	12-1	63.0m	6.0m	20㎡	〃	
〃	986			237㎡		
〃	산99			146㎡		
〃	985			96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9. 15.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7 - 18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9. 15.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위치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추기안	돌산읍 우두리 1014-1번지	위반건축물 (창고 외/ 불법신·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1*-*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시 공고 제2017 - 18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9. 15.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위치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강신오	호명동 1475 외 1필지	위반건축물 (창고 외/ 불법신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여수시 호명동 14**번지	폐문부재
2	황미숙	웅천동 1643번지	위반건축물 (소매점 외/ 불법증축)	〃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3**동 13**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3차)	폐문부재
3	심정규	소라면 죽림리 1130번지	위반건축물 (소매점 / 불법증축)	〃	여수시 무선로 50, 1**동 21**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폐문부재
4	주명자	안산동 715-8번지	위반건축물 (주택/ 불법증축)	〃	여수시 도원로 15*-* (선원동)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시 공고 제2017 - 18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9. 15.

여 수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위치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김난경	웅천동 1694-1번지	위반건축물 (점포/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여수시 소호로 449, R동 *호 (소호동, 지에스칼텍스쌍봉사택)	폐문부재
2	박석봉	화장동 882번지 (분산상가동 101호)	위반건축물 (점포/ 불법증축)	〃	여수시 무선로 50, 106동 ***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이사불명
3	김동근	소라면 봉두리 산183-1 외 2필지	위반건축물 (주택 외3/ 불법증축)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396-**	이사불명
4	이현	소라면 복산리 산157-4번지	위반건축물 (축사/ 불법신축)	〃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3*-*	폐문부재
5	백봉기	화장동 882번지 (주상가동 106호 외2)	위반건축물 (소매점/ 불법증축)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57, 10*동 ***호 (산호 오크힐아파트)	폐문부재
6	최문길	소라면 죽림리 576 외 1필지	위반건축물 (창고/ 불법신・증축)	〃	여수시 통제영3길 * (교동)	폐문부재
7	김태식	공화동 54번지	위반건축물 (점포/ 불법신축)	〃	여수시 공화북8길 * (공화동)	폐문부재
8	박수매	봉산동 718-1번지	위반건축물 (창고/ 불법증축)	〃	여수시 한산사길 34, *호 (봉산동, 연립주택)	폐문부재
9	김진선	돌산읍 율림리 55-2번지	위반건축물 (주택/ 불법증축)	〃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	기타
10	김원봉	웅천동 1714-6번지	위반건축물 (주택/ 불법증축/대수선)	〃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3**동 16**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3차)	폐문부재
11	서경희	미평동 282-1번지	위반건축물 (창고/불법신축)	〃	여수시 미평로 77, 2**동 12**호 (미평동, 미평주공아파트)	폐문부재
12	이봉현	돌산읍 평사리 1405-12 외 1필지	위반건축물 (창고/불법증축)	〃	여수시 무선로 50, 1**동 20**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폐문부재
13	정재홍	돌산읍 평사리 1405-95번지	위반건축물 (바베큐장/불법증축)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동 10**호 (상대원동,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기타
14	이선호	돌산읍 평사리 1292-73번지	위반건축물 (관리실/불법증축)	〃	여수시 여문2로 54-26, 1**동 **2호 (문수동, 문수코아루수아파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